

- 2026년 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
판로개척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6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4월 ~ 12월
-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중소기업(본사 및 사업장 기준, ※ 종된사업장 제외)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마케팅비(공급가액)의 80%, 최대 2개 분야, 합산 7백만원
※ 기업당 2개 분야 내 최대 7백만원까지 선택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시장 개척	①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모바일 등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4백만원
	②온라인시장 진출지원	온라인쇼핑몰,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미디어커머스, O2O플랫폼 이용료 지원	
	③박람회·마켓참가 지원	오프라인 전시박람회 및 마켓 참가를 위한 홍보관 구축, 임차료 지원	7백만원
제품 경쟁력 강화	④제품·공정 및 디자인 개선	제품·공정개선 지원(진단, 분석, 시제품 제작) 디자인 진단 및 개선 비용	7백만원
	⑤홍보·마케팅	웹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제품 BI/CI 개발 비용 지원	3백만원

□ 추진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비고
기업모집	공고일 ~ 4. 17.(금)	참가기업 공고 및 모집	
선정평가	4. 27.(월)	심사위원회 개최	
중간점검	7월 ~ 8월	진척관리, 현장실사, 애로사항 접수	
지원금 지급	매월	완료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	익월 말일 이내

□ 참가신청

- 지원대상 : 본사 및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 모집기간 : 공고일 ~ 4. 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관련 서류 미제출시 “0”점

필수여부	목록	발급기관
필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자가진단표	서식 2
	③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
	④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서식 4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홈택스(hometax) 또는 정부24
	⑥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포함) 1부 - 결산이 완료된 기업은 2024년, 2025년, 미완료 기업은 2023년, 2024년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홈택스(hometax) 또는 정부24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1인기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⑧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 : 개인납세증명 / 법인 : 법인납세증명(※ 유효기간 이내)	홈택스(hometax) 또는 정부24
보유시	⑨ 유효기간이 남은 국내외 인증 및 산업재산권 사본 - 제품 및 품질 관련 국내외 인증(선급인증포함)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경영혁신 인증 - 국내외 특허(출원중인 건 제외) ※ 제품 시험성적서 불인정	해당시
추가 제출	⑩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견적상세내역이 누락된 경우 무효처리) 각 1부	마케팅 용역사 사용 시
	⑪ 거래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 시
	⑫ 거래기업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채납기업 사용불가
가산점	⑬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해당시
	⑭ 최근 3년 내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	
	⑮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 인증서	

□ 지원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
◦ 선정 후 폐업·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신청 및 완료보고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위변조, 신청서가 허위, 대리신청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정수혜 적발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불인정 처리 및 환수,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선정평가

-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심사위원회 3인 내외 구성, 정량(30) + 정성(70) 평가
- 선정기준 : 평정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규모 : 15개사 내외
- 평가기준 : 사업준비도, 제품서비스 시장성 및 경쟁력, 사업추진력, 향후 계획 등
 - ※ 동점기업 발생 시 매출액이 낮은 기업 순으로 선정
 - ※ 최종 선정기업 중 결격사유 또는 포기기업 발생 시 고득점순으로 후보기업 추가선정

□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평가절차 없이 선정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소급적용 불가)
 - ※ 단, 해외전시회 참가의 경우 소급적용 가능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분류에 따라 신청기업이 직접수행 가능한 내용을 용역을 통해 신청한 경우
 - ※ 예) 홈페이지 제작업 → 콘텐츠 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신청 불가
- 신청기업의 주생산품과 관련이 적거나 없는 내용을 집행한 경우
- 거래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상이한 내용을 계약한 경우
- 변경신청 없이 선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완료 및 집행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4대사회보험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을 거래기업으로 사용한 경우
- 특수관계인을 거래기업으로 사용하거나 선정기업 간 거래하는 경우
-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을 거래기업으로 사용한 경우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내용이 미기재된 경우
- 사업 중도포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및 부가가치세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관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현지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선정에 따른 과제 수행 중에도 주관기관의 중간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요청을 미 이행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수혜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에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주관기관	담당자	전자우편	연락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백가람 선임	gr0198@ubpi.or.kr	052-283-7143